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지침

개정 2019.12.23. 대학원운영위원회
개정 2017.10.13. 대학원운영위원회
개정 2017. 8.24. 대학원운영위원회
개정 2017. 6.21. 대학원운영위원회
개정 2016. 7. 7. 대학원운영위원회
개정 2016. 6.15. 대학원운영위원회
개정 2014. 7.23. 대학원운영위원회
개정 2014. 7. 9. 대학원운영위원회
제정 2013.12.26. 대학원운영위원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학칙 제6장 학위수여에 관하여 일반대학원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의 구분)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한다.

제3조(지도교수 제청) ①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과정이수 2기 수업일수 1/4선까지, 박사학위과정은 과정이수 1기 수업일수 1/4선까지 논문지도교수 제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교내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1인 제청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지도상 부득이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7.6.21.>

③ 공동 지도교수는 우리대학교 전임교원, 명예교수, 객원교원, 겸임교원, 타대학교 교원, 교외연구소 연구원 등 중에서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7.6.21.>

④ 명예교수의 지도교수 제청은 명예교수 임용 후 5년까지 가능하다.

제4조(지도교수 변경) ① 제청된 지도교수가 해외 연구년제, 퇴직 및 휴직, 교환 및 기타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매학기 초(수업일수 1/4선 까지)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5., 2016.7.7.>

② 수료자가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지도교수 변경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도교수 또는 대학원생이 해당 학과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학과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8.24.>

제5조(논문 제출자격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당해학기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에 한하며, 각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라야 한다. 단, 수료자는 당해학기에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매 차수별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하다.<개정 2016.6.15.>

학기-차수	신청 기간	공개발표 기간	결과보고서 제출	완성본 제출	학위증명서 발급	대상자
1-1	3.1 - 3.3	3.11 - 3.31	3.31	4.13 - 4.15	4.30	수료자
1-2	5.1 - 5.3	5.15 - 6.20	6.30	7.15 - 7.18	8.22	수료예정자,수료자
2-1	9.1 - 9.3	9.11 - 9.30	9.30	10.13 - 10.15	10.31	수료자
2-2	11.1 - 11.3	11.15 - 12.20	12.31	1.15 - 1.18	2.22	수료예정자,수료자

※ 신청 및 제출기간에 토·일 및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제6조(논문 제출 신청서류) 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학위청구논문 추천 및 심사위원제청서, 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서약서(대학원 행정실 제출)

②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을 석사학위과정 3부, 박사학위과정 5부(각 학과 제출)

③ 심사료는 석사 100,000원, 박사 360,000원이며, 수료생은 반드시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제출 취소 및 연기) ① 논문 제출을 신청한 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학위청구논문심사 미발표자 심사료 반환 요청서' 또는 '학위청구논문심사기간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출 취소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심사료 전액을 환불한다.

③ 논문제출 연기는 다음 차수로 1회에 한하며, 다음 차수에도 논문발표 및 심사요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 신청 차수의 학위청구논문은 불합격 처리하고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4.7.23.>

④ 삭제<2014.7.23.>

제8조(논문 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해당 전공의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2인까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추가적으로 위촉할 경우(석사학위는 2인이내, 박사학위는 3인이내)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23.>

② 논문심사는 매차수별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석사 2회 이상, 박사 3회 이상 심사하여야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4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④ 차수별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까지 '결과보고 및 심사요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개정 2014.7.9.>

⑤ 수료생은 결과보고서 제출이 연기되어 학기가 바뀔 경우 연기된 다음 학기에도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위원) ① 논문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1. 교내·외 대학 전임교원
2. 퇴직 후 5년 이내인 교내·외 퇴직 전임교원
3. 박사학위 취득(단, 예·체능계열은 예외)한 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교내·외 대학 비 전임교원 또는 '심사위원자격인정승인원'에 의해 대학원장이 승인한 해당분야의 권위자

② 학위청구논문의 지도교수 및 외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이 질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④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제목) 삭제<2016.06.15.>

제11조(논문 제목 변경) 삭제<2016.6.15.>

제12조(연구생등록) ① 대학원 수료자로서 당해학기 학술활동 및 학위논문 연구자, 연구과제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학위논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생등록비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150,000원, 자연·공학·의학계열은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청구자가 학위논문 제출신청 연기를 한 후 학기가 바뀌면 바뀐 학기에도 연구생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6.6.15.>

제13조(논문작성 언어) ① 학위청구논문 작성 언어는 제한이 없으나,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종의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고,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문으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제14조(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①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 완성본 5부(소프트 표지, 심사위원 날인 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하고, 공법, 사법학과는 7부를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 완성본의 전문이 수록된 컴퓨터파일과 학위논문저작권동의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5.>

③ 학위청구논문 완성본을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차수로 1회 연기할 수 있으며,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완성본 제출이 연기되어 학기가 바뀔 경우 연기된 다음 학기에도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음 차수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 신청 차수의 학위청구논문은 불합격 처리한다.

제15조(학위수여) ①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퇴학한 자가 석사학위의 수여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학위수여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수여 받은 경우에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학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와 제14조의 개정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7.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